# 안녕하세요

# 개호보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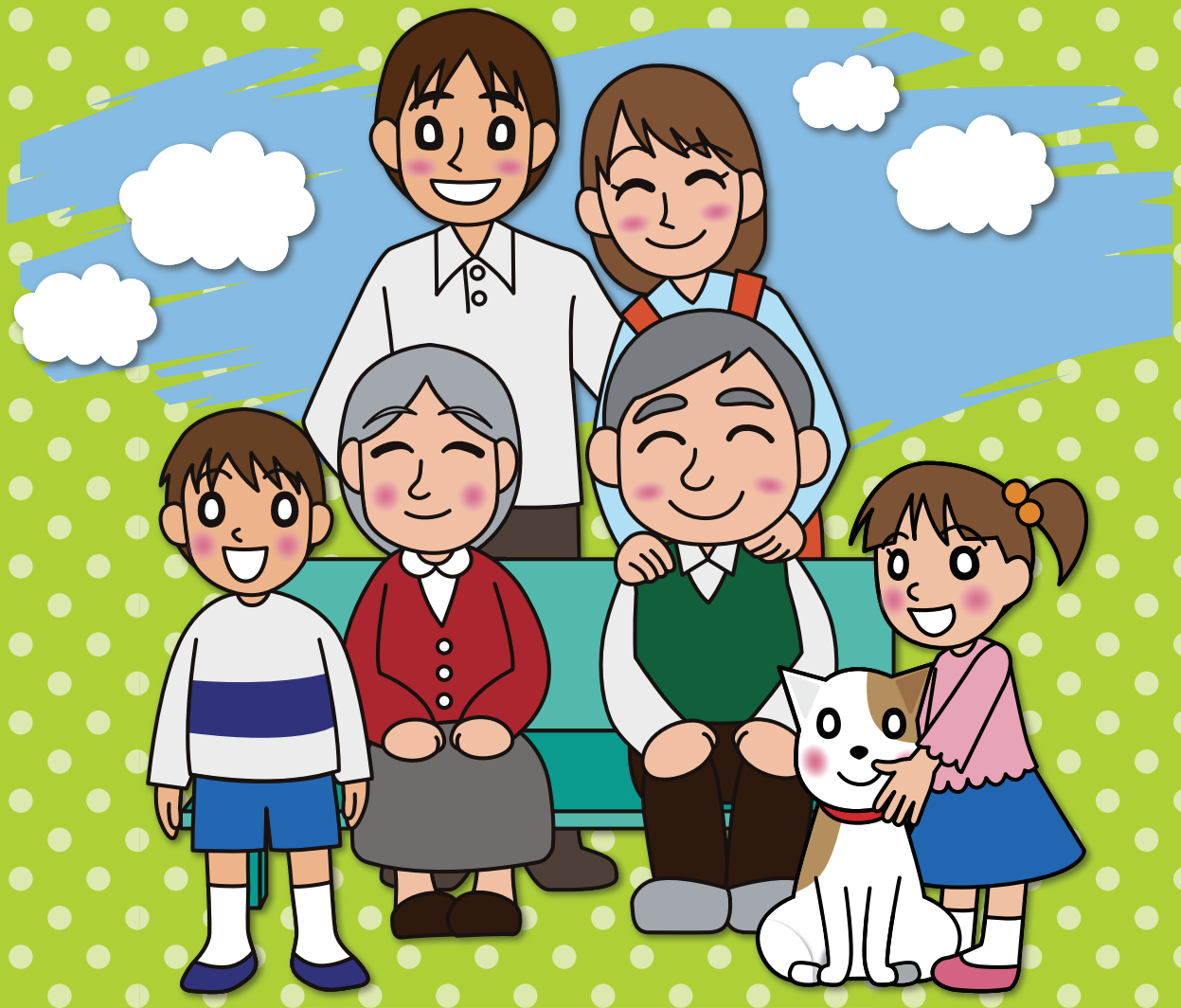

## 개호보험이란?

본격적으로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개호가 필요한 분들이 계속 증가하여 가족만의 힘으로 개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호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사회 전체가 서로 도움으로써, 개호를 하는 쪽·개호를 받는 쪽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친분이 넓어지는 개호보험**

가와사키시

# 개호보험의 대상자

가와사키 시내에 주소가 있는 40세 이상의 시민이 가와사키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가와사키시의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 65세 이상인 분 (제1호 피보험자)

가와사키시에서 65세 도달일의 전월 하순에 「개호보험피보험자증」을 보내드립니다(65세 생일의 전날이 65세 도달일이 됩니다).

##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료보험 가입자 (제2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의 「개호보험피보험자증」에 대해서는 특정 질병(뇌혈관 질환 등의 16개 질병)이 원인으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과 교부를 희망하는 분에게만 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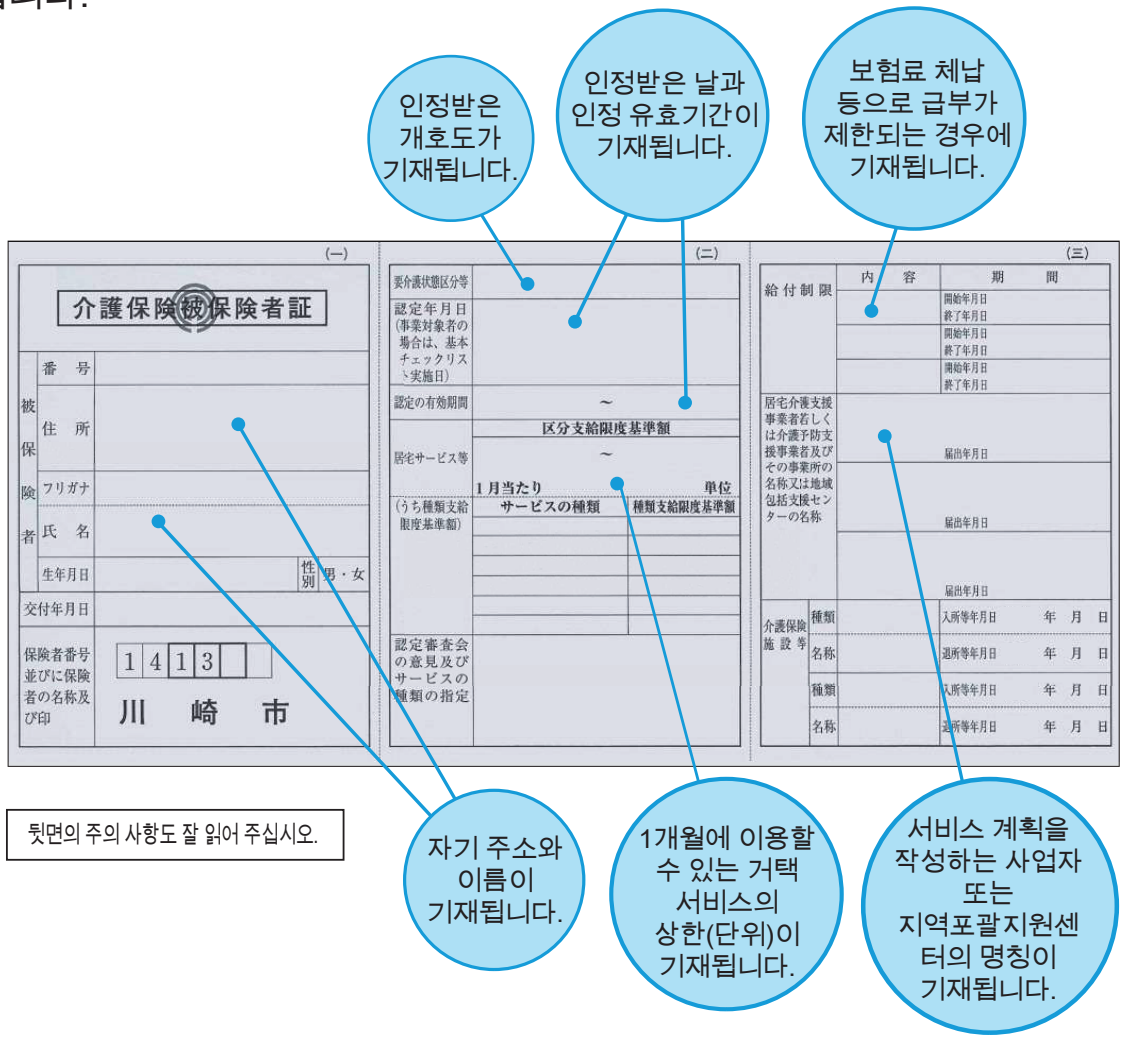


###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입소(입주)하고 있는 분의 특례에 대해

가와사키시의 피보험자가 다른 시정촌에 소재하는 개호보험 시설 등에 입소(입주)함에 따라 주소를 이동한 경우에는, 시설 등 소재지의 시정촌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와사키시의 피보험자가 됩니다(주소지 특례).

# 개호보험피보험자증의 취급

※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올바르게 취급합시다.

- 피보험자증을 받으면 기재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을 때는 신고해 주십시오.
-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 시나 서비스 이용 시에 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주십시오.
-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14일 이내에 피보험자증을 첨부하여 신고해 주십시오.
- 복사한 것은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이나 서비스 이용 시 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증은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즉시 신고하고 피보험자증을 반납해 주십시오.
-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재교부해 드리므로 신청해 주십시오.

개호보험피보험자증에 관한 신고 등은 거주지의 구청·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 개호보험 담당창구(※다이시 지소 및 타지마 지소의 구민센터 보험연금 담당창구는 2025년 1월 6일부터 가와사키 구청으로 이전합니다.)로 부탁드립니다.

# 개호보험과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차이

##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 시 제출합니다. 또, 와병이나 인지증(치매) 등으로 케어 플랜에 근거한 서비스(자택이나 시설에서의 개호나 간호, 기능훈련 등)를 받을 때에 「개호보험부담비율증」과 함께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제시합니다.

##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진료(진찰, 치료, 투약 등)를 받을 때 의료기관의 창구에 제출합니다.

# 개호보험료에 관하여

개호보험료는 원칙적으로 40세 이상인 분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만, 65세 이상인 분과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은 보험료의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개호보험의 급부비는 보험료와 공비로 조달되고 있습니다(오른쪽 그림).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는 급부비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급부비의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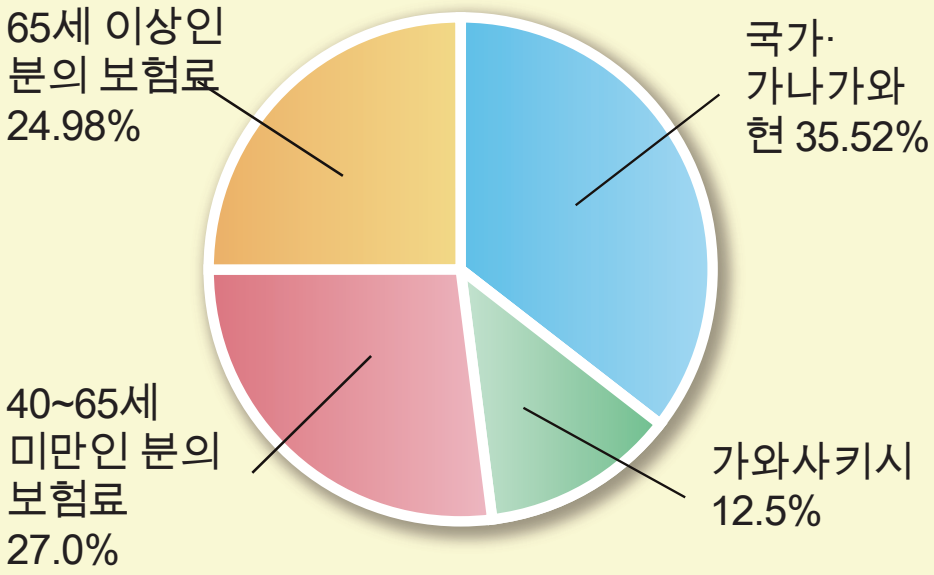


## 65세 이상인 분 (제1호 피보험자) 의 보험료

65세 이상인 분의 개호보험료는 시정촌민세의 과세 상황 등에 따라 19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5~6페이지 참조).
개호보험료의 액수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3년마다 개호보험 재정을 예측하여 시에서 결정합니다.

### 개호보험료의 납부 방법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특별징수)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된 분이나 전입한 분은 곧바로 연금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연금에서 공제가 개시되기까지 대략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납부서 또는 계좌이체(보통징수)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전입 전에 연금에서 공제되던 분도 공제가 일단 정지됩니다.

## 개호보험료의 감면제도에 관하여

65세 이상인 분으로 재해·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개호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개호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과, 지소 구민센터 보험연금 담당창구(※다이시 지소 및 타지마 지소의 구민센터 보험연금 담당창구는 2025년 1월 6일부터 가와사키 구청으로 이전합니다.)로 상담해 주십시오.

## 개호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개호보험료를 체납하면 개호서비스 이용 시에 급부의 제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송부합니다. 또한, 독촉장의 지정 기한이 지나버리면 지정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개호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예저금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40세 이상 64세 미만인 분 (제2호 피보험자) 의 보험료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보험료의 액수와 납부 방법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등에 문의해 주십시오).

# 당신 보험료의 결정방법 65세 이상인 분

| 해당하는 분 | 보험료 단계 | 연간 보험료액 | 대략적인 월액 | 당신의 개호보험료는 기준액의 |
|---|---|---|---|---|
| 생활보호 또는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를 받는 분<br>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고 , 노령복지연금을 받는 분 | 제 1 단계 | 22,540엔 | 1,878엔 | 0.285 배 |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고 , 본인의 과세 연금수입액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 제 2 단계 | 22,540엔 | 1,878엔 | 0.285 배 |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고 제 1·2 단계 이외이며 , 본인의 과세 연금수입액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120 만엔 이하인 분 | 제 3 단계 | 30,210엔 | 2,518엔 | 0.382 배 |
| 세대 전원이 시정촌민세 비과세이고 , 제 1·2·3 단계 이외인 분 | 제 4 단계 | 52,990엔 | 4,416엔 | 0.67 배 |
| 본인은 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같은 세대에 시정촌민세 과세자가 있는 분으로 , 본인의 과세 연금수입액과 합계 소득금액※의 합계가 80 만엔 이하인 분 | 제 5 단계 | 71,180엔 | 5,932엔 | 0.90 배 |
| 본인은 시정촌민세 비과세이지만 , 같은 세대에 시정촌민세 과세자가 있는 분으로 제 5 단계 이외인 분 | 제 6 단계 | 79,090엔 | 6,591엔 | 기준액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125 만엔 미만인 분 | 제 7 단계 | 90,960엔 | 7,580엔 | 1.15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125 만엔 이상 200 만엔 미만인 분 | 제 8 단계 | 98,870엔 | 8,239엔 | 1.25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200 만엔 이상 300 만엔 미만인 분 | 제 9 단계 | 118,640엔 | 9,887엔 | 1.5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300 만엔 이상 350 만엔 미만인 분 | 제 10 단계 | 134,460엔 | 11,205엔 | 1.7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350 만엔 이상 400 만엔 미만인 분 | 제 11 단계 | 142,370엔 | 11,864엔 | 1.8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400 만엔 이상 500 만엔 미만인 분 | 제 12 단계 | 150,280엔 | 12,523엔 | 1.9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500 만엔 이상 600 만엔 미만인 분 | 제 13 단계 | 166,100엔 | 13,842엔 | 2.1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600 만엔 이상 700 만엔 미만인 분 | 제 14 단계 | 181,920엔 | 15,160엔 | 2.3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700 만엔 이상 1,000 만엔 미만인 분 | 제 15 단계 | 197,740엔 | 16,478엔 | 2.5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1,000 만엔 이상 1,500 만엔 미만인 분 | 제 16 단계 | 213,560엔 | 17,797엔 | 2.7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1,500 만엔 이상 2,000 만엔 미만인 분 | 제 17 단계 | 229,380엔 | 19,115엔 | 2.9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2,000 만엔 이상 3,000 만엔 미만인 분 | 제 18 단계 | 245,200엔 | 20,433엔 | 3.10 배 |
| 본인이 시정촌민세 과세이고 , 합계 소득금액※이 3,000 만엔 이상인 분 | 제 19 단계 | 261,020엔 | 21,752엔 | 3.30 배 |

※ 개호보험료를 판단할 때는 합계 소득금액 ( 지방세법 제 292 조 제 1 항 제 13 호 ) 에서「장기 양도 소득 및 단기 양도 소득과 관련된 특별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합니다 . 또한 본인이 비과세인 경우에는 공적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을 공제하고 2021 년도부터는 세제 개정에 대한 대응으로 오른쪽 ☆표 기재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용합니다 .
※ 기준액은「79,097 엔」으로 , 각 단계의 연간 보험료액은 기준액에 6 페이지 오른쪽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 엔 미만의 끝자리를 잘라낸 금액입니다 .

☆ ( 제 1~6 단계인 분 ) ① 급여소득과 공적연금 등과 관련된 잡소득이 있고 소득금액 조정공제의 적용이 있는 경우는 급여소득 금액에 그 공제액을 더한 후 10 만엔을 공제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분으로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는 급여소득 금액에서 10 만엔을 공제 .

# 개호보험 이용 절차

※ 본인이나 가족이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 신청을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 조사 및 주치의 의견서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므로 이용자 본인의 부담은 없습니다.
※ 갱신에 대해: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부터 갱신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개호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피보험자증을 확인해 주십시오.
※ 구분 변경에 대해: 인정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심신의 상태가 변화한 경우에는 인정 구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요개호·요지원 인정이 필요한 분

### 요개호·요지원 인정 신청※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거주지의 구청·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 개호보험 담당창구 (※다이시 지소 및 타지마 지소의 구민센터 보험연금 담당창구는 2025년 1월 6일부터 가와사키 구청으로 이전합니다.)에서 신청합니다.

### 요개호·요지원 인정※

#### 인정 조사·주치의 의견서

심신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인정 조사원이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신체의 움직임에 대한 확인도 함께 실시).

인정 조사 결과 + 주치의의 의견서

시에서 주치의에게 의견서의 작성을 의뢰합니다.

#### 개호인정심사회

의사나 보건·복지 전문가가 인정 조사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개호·지원이 필요한지 심사·판정을 합니다.

#### 인정 결과

- 요개호 5
- 요개호 4
- 요개호 3
- 요개호 2
- 요개호 1
- 요지원 2
- 요지원 1
- 비해당

### 요개호 1~5로 인정된 분

**개호보험의 개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택개호지원사업자 등에서 케어 플랜을 작성합니다.

### 요지원 1·2로 인정된 분

**개호보험의 개호예방서비스 및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 (16페이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서 개호예방 케어 플랜 작성 및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시행합니다.

### 기본 체크 리스트 실시를 통한 대상자 판정

25개 항목으로 구성된 생활 상황 등에 대한 간단한 질문입니다. 체력과 기력 등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생활 기능을 체크합니다(지역포괄지원센터에서 실시).

※ 본인이 사업 대상자 판정 수속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기본 체크 리스트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 대상자 (사업 대상자)

### 자립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분 (비해당)

### 일반 개호예방사업 (16페이지)

### 사업 대상자로 판정된 분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16페이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에서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를 실 시합니다.

# 개호보험료에 관하여

-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의 일부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자기 부담은 이용한 개호보험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현역 수준의 소득이 있는 분은 30%,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 그 이외의 분은 10%가 됩니다.
  ※ 보험급부 대상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이용자 부담 비율(10%~30%)이 기재된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을 발행합니다.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호보험피보험자증과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의 2개가 필요합니다.
-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의 유효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요개호 인정 등을 받는 분에게는 7월 중순 이후에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유효한 개호보험부담비율증을 보내드립니다.

### 이용자 부담 판정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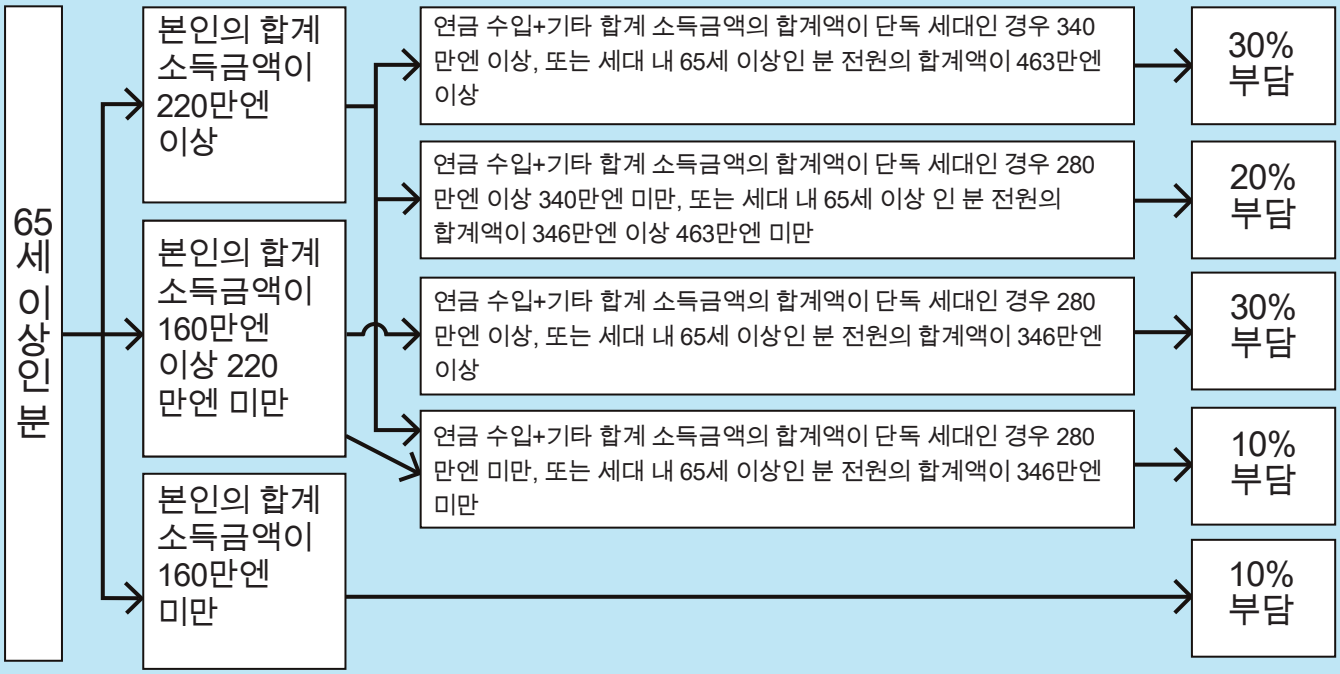


※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 시구정촌민세 비과세인 분, 생활보호 수급자는 상기와 관계없이 10% 부담
※ 「합계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공적연금 등 공제 및 급여소득 공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에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등의 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장기 양도 소득 및 단기 양도 소득과 관련된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개호보험서비스의 지급한도액

개호보험의 재택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요개호도에 따라 1개월당 지급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개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기 부담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시설 서비스 등은 독자적인 지급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요개호도 | 1 개월당 지급한도액 | 요개호도 | 1 개월당 지급한도액 |
|---|---|---|---|
| 사업 대상자 | 5,032 단위 ( 약 6 만엔 ) | 요개호 2 | 19,705 단위 ( 약 21 만엔 ) |
| 요지원 1 | | 요개호 3 | 27,048 단위 ( 약 29 만엔 ) |
| 요지원 2 | 10,532 단위 ( 약 12 만엔 ) | 요개호 4 | 30,938 단위 ( 약 33 만엔 ) |
| 요개호 1 | 16,765 단위 ( 약 18 만엔 ) | 요개호 5 | 36,217 단위 ( 약 39 만엔 ) |

# 요지원 1 • 2, 요개호 1~5로 인정된 분

개호보험서비스의 경우 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과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릅니다.

## 재택 서비스

### 방문개호 (홈헬프서비스)
요개호 1~5

홈헬퍼가 방문하여 신체의 개호나 가사의 원조를 실시합니다.

※요지원 1·2 는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을 이용합니다.

### 방문입욕개호
요지원 1 • 2 | 요개호 1~5

욕조를 실은 입욕 차량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욕개호를 실시합니다.

### 방문간호
요지원 1 • 2 | 요개호 1~5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등을 실시합니다.

### 방문재활치료
요지원 1 • 2 | 요개호 1~5

이학요법사(물리치료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 거택요양관리지도
요지원 1 • 2 | 요개호 1~5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지도·조언 등을 제공합니다.

### 통소개호 (데이서비스)
요개호 1~5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생활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입욕·식사 등의 서비스 및 기능훈련을 실시합니다 .

※요지원 1·2 는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을 이용합니다.

### 통소재활치료 (데이케어)
요지원 1 • 2 | 요개호 1~5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에서 이학요법사(물리치료사) 등이 재활치료를 실시합니다.

### 단기입소생활개호 (숏 스테이)
요지원 1 • 2 | 요개호 1~5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일상생활상의 개호나 기능훈련을 받습니다.

### 단기입소요양개호 (숏 스테이)
요지원 1 • 2 | 요개호 1~5

개호노인보건시설 등의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여 의학적인 관리하에 개호나 기능훈련 등을 받습니다.

# 복지용구・주택 개수 서비스

일상생활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 복지용구 대여

요지원 1・2　요개호 1~5

① 휠체어
② 휠체어 부속품 (전동 보조 장치 등)
③ 특수 침대 (개호용 베드)
④ 특수 침대 부속품 (사이드 레일 등)
⑤ 욕창 방지 용구
⑥ 체위 변환기
⑦ 인지증 노인 배회 감지 기기
⑧ 이동용 리프트 (매달기 금구 제외)
⑨ 난간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
⑩ 슬로프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
⑪ 보행기
⑫ 보행 보조 지팡이
⑬ 자동 배설 처리 장치
(교환 가능 부품 제외)

①~⑧의 복지용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지원 1·2, 요개호 1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⑬의 복지용구는 원칙적으로 요지원 1·2, 요개호 1~3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이용자 부담에 대해

대여 비용의 10%~30%입니다.
지급 한도액(9페이지 참조)이 적용됩니다.
복지용구 종류 및 사업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특정 복지용구 구입비 지급

요지원 1・2　요개호 1~5

① 수세식 변기
② 자동 배설 처리 장치의 교환 가능 부품
③ 배설 예측 지원 기기
④ 입욕 보조 용구
⑤ 간이 욕조
⑥ 이동용 리프트의 매달기 금구 부분
⑦ 슬로프(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
⑧ 보행기
⑨ 보행 보조 지팡이

### ● 이용자 부담에 대해

복지용구 구입비의 70%~90%를 지급합니다.
지급한도액은 매년 10만엔입니다.
수령위임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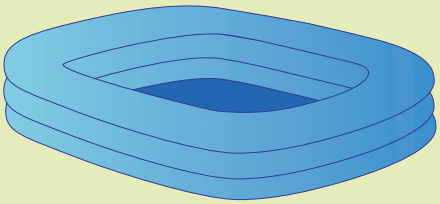

⑤

※「복지용구 대여」 및 「특정 복지용구 구입비의 지급」에 있어서 「슬로프」, 「보행기」, 「보행 보조 지팡이」는 이용 기간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개수비 지급

요지원 1・2　요개호 1~5

(주) 개수 전에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① 난간 설치
② 단차 해소
③ 미끄럼 방지 및 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바닥 또는 통로면의 재료 변경
④ 미닫이 등으로 문 교체
⑤ 양식 변기 등으로 변기 교체
⑥ 상기 ①~⑤의 공사에 부대하여 필요한 주택 개수

**● 이용자 부담에 대해**

주택 개수비의 70%~90%를 지급합니다. 지급한도액은 20만엔입니다.
수령위임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령위임지불제도란?

개호보험을 통한 복지용구 구입비 및 주택 개수비 지급은 일단 비용의 전액을 지불하고 추후에 신청을 통해 보험 급부분(70% 에서 90%)을 환급 받는 상환 지불입니다. 단, 수령위임지불제도를 이용하면 처음부터 10%~30%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등(제삼자 행위)에 따른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에 대해

교통사고 등의 제삼자 행위가 원인으로 개호보험서비스를 이용하여 보험급부를 받는 경우는 거주지의 구청 고령·장애과, 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 개호인정급부 담당창구 (※다이시 지구 및 타지마 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의 개호인정급부 담당창구는 2025년 1월 6일부터 가와사키 구청으로 이전합니다.) 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 특수 사기에 주의를!

시내에서 특수 사기(입금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화로 「현금 카드」를 언급하면 사기입니다.
- 자택 전화는 「자동 응답 전화」로 설정하여 의심스러운 전화는 직접 받지 않도록 합시다.

# 지역밀착형 서비스

익숙한 지역에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와사키시의 피보험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요개호 1~5

주간·야간을 통한 정기순회 및 필요에 따라 수시방문에 의한 개호 또는 간호를 실시합니다.

##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요개호 1~5

야간 정기순회 및 통보시스템에 의한 방문개호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지역밀착형 통소개호

요개호 1~5

이용 정원 18명 이하의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생활 기능 유지 또는 향상을 목적으로 입욕·식사 등의 지원 및 기능훈련을 실시합니다.

## 인지증 대응형 통소개호

요지원 1・2　요개호 1~5

인지증 고령자를 대상으로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입욕·식사 등의 서비스 및 기능훈련을 실시합니다.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요지원 1・2　요개호 1~5

통소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태 및 희망에 따라 방문과 숙박을 조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요개호 1~5

의료 요구가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문 간호와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를 조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

요지원 2　요개호 1~5

비교적 안정된 인지증 환자를 대상으로 소수 인원으로 공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입욕·식사 등의 개호 및 기능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지역밀착형 개호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활개호

요개호 3~5

정원 29명 이하의 소규모 개호노인복지시설에서 일상 생활에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고 재택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개호를 실시합니다.

※ 요개호 1·2인 분은, 거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서비스

시설 서비스는 어떤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4개의 타입으로 나뉩니다. 입소할 시설을 선택한 후 직접 신청하여 계약을 맺습니다.
시설 서비스비 외에 식비, 거주비, 이미용비, 일용품비 등이 듭니다 .

## 개호노인복지시설 (특별양호노인홈)

요개호 3~5

일상생활에서 상시 개호가 필요한 분이 대상이 되는 시설입니다. 입욕, 식사 등의 개호 및 일상 생활상의 돌봄, 기능훈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개호 1·2의 분은, 거택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호노인보건시설

요개호 1~5

급성기의 치료가 끝나 병상이 안정되어 재택 복귀를 위한 재활 치료에 중점을 둔 분이 대상이 되는 시설입니다.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 개호, 기능훈련 및 그 밖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호 의료원

요개호 1~5

장기간에 걸친 요양이 필요한 분이 대상이 되는 시설입니다. 요양상의 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 개호, 기능훈련 및 그 밖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 개호 및 터미널 케어에도 대응합니다.

# 특정시설입주자 생활개호

## (개호형 유료 노인홈, 케어 하우스, 양호노인홈 등)

### 기타, 개호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요지원 1·2인 분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및 비용 등은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양호노인홈은 조치를 통한 입소이므로 거주지의 구청 고령·장애과, 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 고령자지원 담당창구(※ 다이시 지구 및 타지마 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의 고령자지원 담당창구는 2025년 1월 6일부터 가와사키 구청으로 이전합니다.)로 상담해 주십시오.

# 서비스 이용 시의 이용료 경감 제도에 대해

## 고액개호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에 관하여

1개월의 이용자 부담이 일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을 통해 「고액개호(개호예방) 서비스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개호예방) 복지용구 구입비·(개호예방) 주택 개수비의 본인 부담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고액의료합산개호(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에 관하여

1년간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이용자 부담 합계액이 일정한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신청을 통해 「고액의료합산개호(개호예방) 서비스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지급 신청은 매년 7월 31일 시점에서 가입 중인 의료보험자가 창구가 됩니다.

## 특정입소자 개호서비스비의 지급에 관하여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이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소득 등에 따라 부담한도액이 설정되고 거주비·식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가 경감됩니다.

##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이용료의 부담경감제도에 관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이 사회복지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주거비·식비가 경감됩니다.

##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에 따른 이용자 부담 경감제도에 관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이 인지증 대응형 공동생활개호(그룹 홈)를 이용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집세, 식비, 광열수비가 경감됩니다.

## 그 밖의 이용료의 부담경감제도에 관하여

-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주거비·식비를 경감해주는 가와사키시의 독자적인 제도도 있습니다.
- 상기 이외에도 서비스 이용료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의 구청 고령·장애과, 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 개호인정급부담당창구 (※다이시 지구 및 타지마 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의 개호인정급부담당창구는 2025년 1월 6일부터 가와사키 구청으로 이전합니다.)로 상담해 주십시오.

# 요지원 1・2인 분・비해당인 분을 위한 서비스

##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

### 대상자

- 요지원 1·2 판정을 받은 분
- 65세 이상인 분으로 「사업 대상자」 판정을 받은 분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실시하는 기본 체크 리스트를 통해 개호예방·생활지원 서비스사업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 40세부터 64세까지의 분(제2호 피보험자)은 사업 대상자의 대상이 아니므로 「요지원 1·2」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 개호보험제도 이용자 부담 비율에 준합니다.

**개호예방 방문 서비스**
개호 사업소의 홈헬퍼 및 「가와사키 생활 서포터」가 가정을 방문하여 이용자와 협동하여 가사 보조 등을 제공합니다.

**개호예방 통소 서비스**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입욕·식사, 생활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체조 및 근력 트레이닝 등을 실시합니다.

**개호예방 단시간 통소 서비스**
데이서비스센터에서 입욕·식사, 생활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체조 및 근력 트레이닝 등을 짧은 시간에 실시합니다.

## 일반 개호예방 사업

65세 이상인 분, 해당 지원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분이 대상입니다.
지역 속의 개호예방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개호예방 보급 계발 사업**
개호예방에 관한 팸플릿 배포 및 건강 강좌·강연회 등의 개최 등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을 위한 개호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립니다.

**(2) 지역 개호예방 활동 지원 사업**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개호예방 활동 지원 및 개호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육성 등을 실시합니다.

## 휴식 원기 광장 사업

가와사키시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분으로 가와사키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분을 대상으로, 시내의 모든 「휴식의 집」에서 매주 1회 전문 지도원이 넘어지지 않는 몸만들기를 위한 체조나 개호예방·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미니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기간은 6개월간입니다.
※ 의사가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분이나 요개호 1~5의 인정을 받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지역포괄지원센터란?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자립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건사, 주임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등의 직원이 개호·복지·건강·의료 등의 다양한 상담에 응해주는 「고령자 여러분의 가까운 상담창구」입니다(거주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내용

**종합 상담・지원 권리 옹호 사업**

개호보험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상담 업무 및 학대 방지 등 권리 옹호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호예방 케어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케어 플랜 등을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 서비스 제공 후의 상황 확인도 실시합니다.

**포괄적・계속적 매니지먼트 지원**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케어 매니지먼트의 후방 지원을 실시합니다.

## 지역포괄지원센터

(시외 국번 044)

| 구 | 명칭 | 전화번호 | FAX 번호 |
|---|---|---|---|
| 가와사키구 | 오쥬엔 | 287-2558 | 287-2577 |
| | 코슌엔 | 211-6313 | 223-1240 |
| | 다이시노사토 | 266-9130 | 266-9131 |
| | 시온 | 222-7792 | 222-7796 |
| | 쿄마치 | 333-7920 | 333-7938 |
| | 다이시츄오 | 270-5112 | 287-5562 |
| | 오오시마나카지마 | 329-1680 | 322-2553 |
| | 후지사키 | 201-8831 | 201-8834 |
| | 비올라 가와사키 | 270-3215 | 270-5682 |
| 사이와이구 | 코후엔 | 556-4355 | 511-3511 |
| | 유메미가사키 | 580-4765 | 742-8040 |
| | 카시마다 | 540-3222 | 540-3220 |
| | 샹그릴라 | 520-3863 | 520-3861 |
| | 민나토쿠라스마치 | 520-1905 | 520-1906 |
| | 사이와이히가시 | 555-1411 | 555-1412 |
| 나카하라구 | 스미요시 | 455-0980 | 455-0883 |
| | 코다나카 | 798-2332 | 755-5656 |
| | 히라마노사토 | 544-4012 | 544-3961 |
| | 미야우치 | 740-2814 | 740-2816 |
| | 이다 | 751-6661 | 751-6385 |
| | 토도로키 | 281-3666 | 281-3616 |

| 구 | 명칭 | 전화번호 | FAX 번호 |
|---|---|---|---|
| 타카츠구 | 와라쿠 | 799-7951 | 799-7952 |
| | 스에나가 | 861-5320 | 861-6194 |
| | 히다마리노소노 | 814-5637 | 814-5636 |
| | 미조노쿠치 | 820-1133 | 822-0500 |
| | 히사스에 | 797-6531 | 797-6540 |
| | 키노오카 | 820-8401 | 820-8402 |
| | 리케아무카이가오카 | 865-6238 | 865-6239 |
| 미야마에구 | 미카도소 | 777-5716 | 777-1193 |
| | 와시가미네 | 978-2724 | 976-6470 |
| | 후지미 플라자 | 740-2883 | 777-3239 |
| | 리스토어 가와사키 | 976-9590 | 976-9591 |
| | 프렌드 시보쿠 | 871-1180 | 877-2800 |
| | 미야마에다이라 | 872-7144 | 852-3377 |
| | 비올라 미야자키 | 948-5371 | 948-5372 |
| 타마구 | 나가사와소쥬노사토 | 935-0086 | 935-0093 |
| | 타마가와노사토 | 935-5531 | 935-3511 |
| | 타이요노소노 | 959-1234 | 959-1233 |
| | 스게노사토 | 946-5514 | 946-3432 |
| | 슈쿠가와라 | 930-5151 | 930-5911 |
| | 요미우리랜드 하나하우스 | 969-3116 | 969-3160 |
| | 노보리토 | 933-7055 | 933-7077 |
| 아사오구 | 카키오 아루나엔 | 989-5403 | 988-9774 |
| | 쿠리기다이 | 987-6505 | 380-7970 |
| | 니지노사토 | 986-4088 | 986-1027 |
| | 카타히라 | 986-4986 | 986-4987 |
| | 유리가오카 | 959-6522 | 712-0202 |
| | 신유리 | 969-3388 | 969-0200 |
| | 타카이시 | 959-6020 | 959-6021 |

※ 각 지역포괄지원센터의 담당 지역에 대해서는 거주지의 구청·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 개호보험 담당창구(※다이시 지구 및 타지마 지구 건강복지스테이션의 개호인정급부 담당창구는 2025년 1월 6일부터 가와사키 구청으로 이전합니다.)로 문의해 주십시오.

# 외국인의 피보험자 자격

외국인도 65 세 이상으로 가와사키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가와사키시의 개호보험에 가입합니다 . 단 , 재류자격이「특정 활동」중 다음 가 , 나에 해당하는 분은 개호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습니다 .

가 . 의료를 받는 활동 또는 해당 활동을 하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목적으로 입국 및 체류하는 분

나 . 자산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광 등을 목적으로 1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본에 체재하는 부유층의 경우

「특정 활동」의 재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가와사키시에 전입하신 분은 거주하시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또는 지소 구민센터 보험연금 담당 창구에서 다음 서류를 확인합니다 .

- 재류 카드
-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교부받은「지정서」( 여권에 첨부 )

## ● 문의는

(시외 국번 044)

| 문의 내용과 거주지 | 개호보험료에 관하여 (개호보험료) | 개호인정에 관하여 (개호인정) | 개호서비스에 관하여 (개호급부) | 개호보험 이외의 서비스에 관하여 (고령자 지원) | FAX 번호 |
|---|---|---|---|---|---|
| 가와사키구 | 가와사키시 보험 콜 센터 200-0783<br><br>접수 시간<br>평일 8:30~17:15<br>둘째 주·넷째 주 토요일 8:30~12:30 | 201-3282 | 201-3282 | 201-3080 | 201-3291 |
| 다이시 지구 | | 271-0152 | 271-0161 | 271-0157 | 271-0128※ |
| 타지마 지구 | | 322-1990 | 322-1996 | 322-1986 | 322-1995※ |
| 사이와이구 | | 556-6655 | 556-6689 | 556-6619 | 555-3192 |
| 나카하라구 | | 744-3179 | 744-3136 | 744-3217 | 744-3345 |
| 타카츠구 | | 861-3263 | 861-3269 | 861-3255 | 861-3249 |
| 미야마에구 | | 856-3245 | 856-3238 | 856-3242 | 856-3163 |
| 타마구 | | 935-3185 | 935-3187 | 935-3266 | 935-3396 |
| 아사오구 | | 965-5198 | 965-5146 | 965-5148 | 965-5206 |

※ 2025년 1월 6일 이후 다이시 지구·타지마 지구의 FAX 번호는 변경되므로 번호를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와사키시 종합 사업 | 개호예방 생활지원 서비스사업(종합 사업)에 대해 |
|---|---|
| 전용 내비게이션 다이얼 | 0570-040-114 평일 8:30~17:15 |

| 건강복지국 장수사회부 | 보험료에 대해 | 인정에 대해 | 급부에 대해 |
|---|---|---|---|
| 개호보험과 | 200-2691 | 200-2455 | 200-2687 |

| 건강복지국 | 지역포괄지원센터에 대해 | 인지증·권리 옹호에 대해 |
|---|---|---|
| 지역포괄케어추진실 | 200-2681 | 200-2470 |

| 건강복지국 보건의료정책부 | 휴식 원기 광장에 대해 |
|---|---|
| 건강증진과 담당 | 200-2411 |

* 안녕하세요. 개호보험입니다 (영어·중국어·한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타갈로그어)
가와사키시 홈페이지: https://www.city.kawasaki.jp/350/page/0000049639.html

* 개호보험의 사업자 정보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호서비스 정보 공개: https://www.kaigokensaku.mhlw.go.jp/

* 가와사키시의 생활지원 등 서비스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와사키시 생활지원 등 서비스 정보 공표: https://kana.rakuraku.or.jp/kawasaki


**가와사키시 건강복지국 장수사회부 개호보험과**

2024년 7월 발행